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봉양순 의원
- 나. 의안번호: 제1346호
- 다. 발의일자: 2023.10.16.
- 라. 회부일자: 2023.10.23.

2. 제 안 사 유

- 생산·소비·유통·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도모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음.
- 또한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의 순환경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함.
- 나. ‘순환경제’, ‘순환경제사회’, ‘순환원료’의 의미를 규정하고, ‘순환이용’ 활동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수리권을 설정하며,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5조).
- 라.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시책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마.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등 폐기물 발생 이후 지표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고 시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등을 명시함(안 제9조).
- 바.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순환이용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사.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
- 아. 순환경제사회 발전 시설 설치·운영, 연구·개발, 산업 육성, 순환자원 사용 사업 등에 자금 융자 및 융자 자금으로 재활용육성자금 등 활용 근거 마련(안 제20조제4항).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22.12.31.)되고, 2024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의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항	내 용
제명	· 상위법령에 맞춰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
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3조	· 기본 원칙 강화(수리권, 순환이용 우선 고려 등)
안 제7조	· 순환경제사회 발전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안 제9조	·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
안 제11조	· 순환이용센터 설립·운영 근거
안 제14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안 제20조	· 재정적 지원 등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제명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환경제’, ‘순환경제사회’, ‘순환이용’, ‘순환원료’, ‘순환자원’, ‘자원순환’, ‘자원순환산업’, ‘자원순환시설’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현행 조례상 ‘자원순환’의 개념이 환경정책의 하위 범주로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면, 본 조례안에서는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로 정의하는 등 대체적인 용어의 정의를 사후관리 개념에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전 예방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내구성 우수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 중 ‘수리권’은 ‘소비자가 스스로 또는 수리 사업자의 수리 대행 등을 통해 보유 중인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로 현재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¹⁾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 2건²⁾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

- 안 제7조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를 보급·정착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안 제9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발생 감량률,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등의 중장기·단계별 목표를 설정

1) “아이폰도 갤럭시도, ‘수리할 권리’를”(서울경제, 2023.7.8.,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1URS8LR>)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021.11,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2023.8,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순환 경제사회 전환 성과를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동 규정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담긴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소관부서는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부와 조속한 협의 및 관련 통계 자료 구축 등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1조는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순환이용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한 것이고, 안 제21조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상·행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
- 안 제14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순환경제특별 회계’의 설치를 명시한 것으로, 세입은 국가 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6가지 항목으로, 세출 사업 (안 제12조제1호~제10호)은 폐기물 관련 시설 설치 등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설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자치 입법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종량제 봉투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현 상황에서 세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보조금이나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회계의 도입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안 제20조제4항은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의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제5항은

제4항의 필요 자금을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 정의, 기본원칙, 순환경제 목표 설정,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

다만,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소관 부서는 하위 법령의 제·개정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